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64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김영식

권명호 · 정운천 · 태영호

김성원 · 이종성 · 박성민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비료의 공급) ① 농림축산	제7조(비료의 공급) ①
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	
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	
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	
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・	<u>광</u>
<u>광역시장・도지사</u> ・특별자치도	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-
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	
다) 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	
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	
(이하 "농업협동조합중앙회"라	
한다)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	
게 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